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경영직 불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2명(6급 1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1명, 7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0명(6급 7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대통령령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소속기관 지원 및 사무소의 관할구역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연구”를 “연구 및 정밀검사제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경감시 업무

제33조제1항 중 “감사관 및 검역본부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품질검사과장·시험연구소장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을 “품질검사과장·시험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지역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 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동물 및 축산물 분야의 경우에는 광주시·안성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과천시·수원시를 포함한다), 강원특별자치도
------------	-------	---

별표 1의2의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강원특별자치도
------------	---------

별표 2 제1호의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속초 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태백시 · 고성군 · 양구군 · 인제군 · 양양군 · 평창군 · 횡성군 · 영월군 및 정선군
-----------	----------------	---

별표 2 제2호의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속초 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속초시 · 고성군 · 양구군 · 양양군 및 인제군
-----------	----------------	--

별표 2 제2호의 서울지역본부 동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해 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삼척시 · 태백시 · 평창군 · 횡성군 · 영월군 및 정선군
-----------	----------------	--

별표 3의 강원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	----------------	---------

별표 4의 강원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 지원	원주사무소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횡성사무소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횡성군
	강릉사무소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중 강릉시
	삼척 · 동해사무소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중 삼척시 · 동해시
	속초 · 양양사무소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중 속초시 · 양양군
	고성사무소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고성군
	홍천사무소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홍천군
	영월사무소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영월군

	평창사무소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평창군
	정선·태백사무소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정선군·태백시
	철원사무소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철원군
	인제사무소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인제군
	양구사무소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중 양구군·화천군

별표 5의 강원지원란 및 동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동부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별표 6 중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농업연구관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8”을 “115”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10”을 “11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7 중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농업연구관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23”을 “120”으로 하고, 행정사무

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3”을 “24”로 하며, 농업사무관 “25”를 “24”로 하고,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8”을 “100”으로 하며, 농업주사 “24”를 “25”로 하고,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7”을 “38”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8”을 “27”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8”을 “21”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40”을 “37”로 하며,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4”를 “6”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12”를 “11”로 하며, 방호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9”를 “23”으로 하고, 수의사무관 “15”를 “14”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

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42”를 “39”로 하고,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4”를 “6”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12”를 “11”로 하고, 방호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3”을 “35”로 하고, 방호서기보 “4”를 “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7”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9”를 “31”로 하고, 방호서기보 “4”를 “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6”을 “15”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9월 10일”을 “2025년 9월 1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1월 30일”을 “2025년 11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제2항 중 “2023년 11월 30일”을 “2025년 11월 30일”로, “2023년 12월 1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2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1명,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은 2026년 8월 3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2명(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1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으로 본다.

제3조(상호 이체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상호 이체되는 별표 6 및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별표 8 및 별표 9의 정원 3명(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상호 이체되는 별표 8 및 별표 9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별표 6 및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사무

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촌정책국) ① ~ ⑨ (생략)	제8조(농촌정책국)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⑫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제15조(식물검역부) ① ~ ④ (생략)	제15조(식물검역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u>식물 병해충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잡초의 정밀검</u>	<u><삭 제></u>
<u>사제도 운영</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u>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u>	<u><삭 제></u>
<u>경감시업무</u>	

5. 삭 제

6. ~ 8. (생 략)

⑥ (생 략)

⑦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식물 병해충·유전자변형생
물체(LMO) 및 잡초의 검사기
법의 개발 및 연구

5.·6. (생 략)

<신 설>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40조에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
형직위”란 감사관 및 검역본부
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첨단기자재종자과장, 농림축
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식
물방제과장·해외전염병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
사과장·시험연구소장 및 농식

6. ~ 8.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연구 및 정밀검
사제도 운영

5.·6. (현행과 같음)

7.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
경감시 업무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감사관-----
-----.

② -----

----- 품질검사
과장·시험연구소장-----

품 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3년 9월 1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2025년 9월 10일-----.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에 따른 농업사무관 정원 중 1명은 <u>2023년 9월 10일까지</u> 존속하며, <u>2023년 9월 11일 이후에는</u>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농업주사 1명으로 본다.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은 <u>2023년 11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5년 11월 30일</u> -----.
② · 제3조 (생략)	②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에 따른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7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명은 <u>2023년 11월 30일까지</u> 존속하며, <u>2023년 12월 1일</u>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7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3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 ----- ----- <u>2025년 11월 30일</u> ----- ----- <u>2025년 12월 1일</u>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u>13</u>	<u>14</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농업연구관	<u>2</u>	<u>1</u>	-1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18</u>	<u>115</u>	-3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110</u>	<u>113</u>	+3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u>	<u>3</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21</u>	<u>20</u>	-1
•	•	•	
•	•	•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u>13</u>	<u>14</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농업연구관	<u>2</u>	<u>1</u>	-1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23</u>	<u>120</u>	-3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기록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3</u>	<u>24</u>	+11
·	·	·	

•	•	•	
농업사무관	25	24	-1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108</u>	<u>100</u>	-8
•	•	•	
•	•	•	
농업주사	<u>24</u>	<u>25</u>	+1
•	•	•	
•	•	•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u>37</u>	<u>38</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28</u>	<u>27</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u>	<u>3</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21</u>	<u>20</u>	-1
•	•	•	
•	•	•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 • <u>18</u>	• • <u>21</u>	+3
• •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 • <u>40</u>	• • <u>37</u>	-3
• •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 • <u>4</u>	• • <u>6</u>	+2
운전서기보	<u>12</u>	<u>11</u>	-1
방호서기보	<u>7</u>	<u>6</u>	-1
•	•	•	
•	•	•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u>19</u>	<u>23</u>	+4
·	·	·	
·	·	·	
수의사무관	<u>15</u>	<u>14</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 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42</u>	<u>39</u>	-3
·	·	·	
·	·	·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u>4</u>	<u>6</u>	+2
운전서기보	<u>12</u>	<u>11</u>	-1
방호서기보	<u>7</u>	<u>6</u>	-1

	.	.	.	
	.	.	.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33</u>	<u>35</u>	+2
•	•	•	
•	•	•	
방호서기보	<u>4</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8</u>	<u>17</u>	-1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9</u>	<u>31</u>	+2
·	·	·	
·	·	·	
방호서기보	<u>4</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6</u>	<u>15</u>	-1